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21. 6. 21.(월)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	생년월일	—
	소속/직위(직급)	○○○/○○	연락처	031-560-○○○○

상담 내용 남양주도시공사 직원이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면접심사 위원으로 참석 시, 복무관리(연차, 출장 등) 방법에 대한 문의

상담 결과

가.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판단

- 외부강의등이란, 공직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함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소속기관장의 사전 검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
- ▶ 사회자와의 개별 방송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
- ▶ 서면심사·서면자문 등에 응하는 경우
- ▶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 ▶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
- ▶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 등 행위

- 면접위원 참석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정보등을 전달 또는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님

나. 복무관리 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과 복무관리는 별개의 사안임에 따라 공사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함
- 남양주도시공사 취업규정에서는 외부강의등 실시에 따른 복무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만약 근무 시간중에 외부강의등을 실시 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국권위 예규 216호) 제6조(복무)를 준용하여 외부강의등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출장처리하고 그 외에는 개인 연가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2021년 6월 30일

행동강령책임관 감사실장 代 부장 정 민 우

